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스타트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①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와 ②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와 딥테크 팁스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전, 안내드리는 사전 공고이며, 사업별 스타트업 세부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초격차 10대 분야별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 >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⑥ 빅데이터·AI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 우주·항공
⑨ 차세대 원전	⑩ 양자기술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3년간 최대 6억원, 기술개발 2년간 최대 5억원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 기술개발 3년간 최대 15억원,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1년간 각 최대 1억원 (☞ 딥테크 팁스)
- * 자세한 사항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현황(2P)」 및 「세부사업별 지원계획(3P)」를 통해 확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현황

구분	구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딥테크 팁스
지원 개요	대상	· 초격차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 규모	· 150개사 내외 * '22년 선정기업 100개사('24년까지 계속 지원), 후속 스케일업 25개사 제외	· 120개사 내외 ('23년 신규과제 기준)
	기간	· '23년 4월 ~ '25년 12월 (3년간)	· (R&D) 선정시점부터 3년간 · (비R&D) 선정시점부터 10개월 * 접수·평가·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될 예정인 「팁스(TIPS) 통합공고」 참조 ** 비R&D: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한도	· (사업화) 기업당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 x 3년) * 연간 평균 지원금은 1.3~1.5억원 내외로, 별도 사업비 배정 평가 예정 · (R&D) 기업당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2년)	· (R&D) 기업당 최대 15억원 · (비R&D) 기업당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기업 부담금	· (사업화) 총사업비의 30% 내외 (현물+현금) · (R&D)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현물+현금)	· (R&D)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현물+현금) · (비R&D)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물+현금)
선정 방법	프로그램	· (기술고도화) R&D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기술·제품 완성 및 고도화 · (글로벌협업) 글로벌 대·중견·대학 협업 매칭을 통한 신규 BM 창출 · (투자유치) 국내외 AC·VC로부터의 신규·대형 투자유치 촉진	· (액셀러레이팅) 팁스 운영사가 추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보육·멘토링 지원 · (사무공간) 서울·대전 팁스타운 입주 희망시 우대 · (네트워킹) '팁스' 브랜드와 연계한 네트워킹·투자유치 관련 행사 참여 지원
	사업 신청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 → ③기본정보입력 및 주관기관 선택 → ④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 ⑤제출	· 팁스 운영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창업기업은 개별단위로 신청 불가
	선정 평가	· 2단계(서류 → 발표) 평가 * 서류평가 :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3억원 이상 先투자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 기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 진행

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공고 예정인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 (지원방향) 초격차 분야별 핵심기술·제품,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 지원규모 : '23년 150개사 ('22년 선정기업 100개사, 스케일업 25개사 제외)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지원규모 및 분야(안) >

5대 신산업	'23년 신규 ('23~'25)	일반공모(50%)			민간검증(30%)		부처추천(20%)	
		일반공모(50%)	민간검증(30%)	부처추천(20%)	일반공모(50%)	민간검증(30%)	부처추천(20%)	
시스템반도체	25개사	12개사	8개사	5개사	12개사	8개사	5개사	
바이오헬스	45개사	23개사	13개사	9개사	22개사	12개사	10개사	
미래모빌리티	30개사	15개사	9개사	6개사	15개사	8개사	7개사	
친환경에너지	25개사	12개사	8개사	5개사	13개사	8개사	5개사	
로봇	25개사	12개사	8개사	5개사	13개사	8개사	5개사	
합계	150개사	74개사	46개사	30개사	74개사	46개사	30개사	

* '23년 신규 선발 150개사 중 일반공모(74개사) 트랙에 한해 모집공고 예정

□ 지원분야 : 초격차 5개 분야*

*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23년에는 5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추후 지원기술 분야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기업당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 x3년)
* 연간 지원한도(최대 2억원) 내 별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예정
- (R&D) 기업당 최대 5억원(연간 최대 2.5억원 x2년)
- (프로그램 지원) 신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대 프로그램(기술사업화, 글로벌협업, 투자유치) 지원

- ① 기술사업화 : 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매칭을 통한 기술완성·고도화 지원
- ② 글로벌협업 : 글로벌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간 공동 R&D 등 협업 매칭 지원
- ③ 투자유치 : 교육, 컨설팅, 글로벌 AC·VC 대상의 IR 등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23년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 (우대사항) 연구원 창업기업에 가점 부여
* (연구원 창업기업 기준)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최근 3년 내 대·중견·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
** 우대사항(가점)은 대국민 모집공고(일반공모 트랙)에 한해 부여
*** 우대기준에 대한 별도 증빙(과거 재직증명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부여
-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지원 제외 기준
①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기업, 재참여 불가)
②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결적인력 등)에 소속된 자(기업)
③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④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⑦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절차

- (평가절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서류→발표) 평가
- (평가내용) 기업 보유기술·제품의 우수성, 비즈니스모델 등 사업 확대가능성, 글로벌 투자유치 등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

□ 문의처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81, 1682, 1684, 1687)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공고 예정인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참고

② 딥테크 팁스

※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큰 딥테크 스타트업에 큰 규모의 자금 공급 필요
- (지원방향) 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에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도모

□ 지원규모 : '23년 120개사 (R&D 신규과제 120개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지원분야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0대 분야	세부 분류(예)
①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②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③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④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⑤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⑥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⑧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⑨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⑩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지원내용

- (R&D) 연구개발자금 최대 15억원 지원(최대 3년)
- (비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지원(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기술력·사업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시장으로부터 검증받아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제외) 아래 표 참고
 -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

< 딥테크 팁스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② 현재 프리팁스 및 팁스-R 수행기업(프리팁스, 팁스-R 종료 후 참여가능)
-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제·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④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 참조]
-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 창업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팁스 운영사가 일괄 추천

□ 선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 자격(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적절성 검토
- (기술성 평가)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파급성 등을 평가
- (시장성 평가)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 *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경우 시장성 평가 면제(패스트트랙)
- (최종 선정)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및 기간·지원 금액 결정

□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R&D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투자협력실	02-2280-0420, 0421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젠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 총괄(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2023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참고

【붙임】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